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178 취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44,040원, 농어촌특별세 441,2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가. 임산물의 취득

1) 원고는 2014. 12. 12. [redacted]지방산림청 B관리소장(이하 'B관리소장'이라고 한다)과 다음 [표 1]과 같이 [redacted]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D 임야에 있는 소나무 외 2종의 임산물(이하 '이 사건 임산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207,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4. 12. 17. 이 사건 임산물을 취득하였다.

계약일	소재지	벌채면적	수종	수량	매매대금	취득일
2014. 12. 12.	D	405,000㎡	소나무 외 2	5,332.13㎥	207,800,000원	2014. 12. 17.

[표 1] 임산물의 취득 현황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산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7. 30.경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유 임목 매각자료'를 제공하면서 위 매각자료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위 매각자료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임산물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임산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5,244,040원, 농어촌특별세 441,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산물은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러한 원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입목의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임산물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1호에 의하면,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② 여기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약[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B관리소장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원고는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B관리소장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원고는 반출기간 내에 매수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가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기준 생략)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원고가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원고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2014. 1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19호 서식(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갑 제5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2조(반출완료통보) 원고는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B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원고는 B관리소에서 시행한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B관리소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는 찾을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한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절차에 관한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임산물 반출에 필요한 운재로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제시하는 예정노선에 따라 매수자가 시설하여야 하며, 사유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협의처리 하여야 한다.
- 산물의 반출은 운재로 준공검사 후 반출이 가능하며, 복구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산물반출로 인하여 산림 및 주변 농경지, 민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매수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전 사업지 내 황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은 존치할 입목으로서 벌채할 수 없다.

다) 한편 [redacted]지방산림청 [redacted]관리소장은 위와 같은 국유임산물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근주(根柱: 나무를 벤 후 남는 부분으로서 나무의 뿌리를 포함한다)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수자는 나무의 뿌리까지는 반출할 권리가 없다.
○ 만약 매수자가 나무의 뿌리를 캐내어 반출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보증금, 기납부 대금 및 매각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 근주는 매각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무의 뿌리 및 밑동을 제외한 '한 그루의 일부'만을 매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매수인들이 취득한 물건은 모두 '입목' 상태의 매각을 통하여 "원목의 가격"만을 산정하여 계약한 것이다.
○ 취득물건은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목'이 아니라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B관리소장은 대금납입을 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인한 후 원고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⑴ 그런데 국유림법(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위 관계 규정과 별지 제19호, 제20호 서식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되,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도 등이 첨부된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5호 가목, 나목, 제10호 나목 1), 2)에 의하면, ①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에, ②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③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구역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운재로 설계도서(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 1부, 재적조서 1부와 함께, ㉯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구역위치도, 실측도, 운재로 설계도서(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 재적조서 각 1부에 더하여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⑵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B관리소장이 국유림을 벌채하여 매수인에게 그 산물인 원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①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매수인(국유림법령에서 정한 '입목' 매각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함으로써 그 매수인에게 벌채 권한도 위임함과 아울러 자신의 임산물 인도의무의 이행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정한 반면에, ②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국유림법령에서 정한 '원목' 매각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B관리소장이 직접 벌채 · 생산한 원목의 위치도가 포함된 인도증을 교부함으로써 인도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산물 인도증을 교부받고 입목을 직접 벌채한 사람으로서 국유림법령에서 정한 '입목'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① 원고는 반출기간 내에 임산물을 벌채하여 국유림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고(제4조), ② 이를 반출하지 아니하면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되며(제5조), ③ 미리 페인트로 표시된 벌채 대상 임산물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각대상 임산물로 정해져 있다(제9조).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입목의 매각과는 달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 내용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국유림법령에서 정한 '입목'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유림법령에서 정한 '원목' 매각에 의한 매수인, 즉 이미 벌채된 원목을 인도받아 반출하는 매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언제나 '벌채된 원목'으로서 동일하다.

다만, 그 벌채 행위가 원고가 B관리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B관리소장이 본래의 권한에 따라 직접 이행한 것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 또한 원고가 참가한 입찰과 유사한 [redacted]지방산림청 [redacted]관리소의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공고에 의하면, ① 근주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② 매수인은 근주를 반출할 권리가 없으며, ③ 매수인이 취득한 물건은 모두 "원목의 가격"만을 산정하여 계약하였다.

특히 [redacted]지방산림청 [redacted]관리소장은 "취득물건이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라)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주산물의 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그런데 원고와 B관리소장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주를 매각 임산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히 계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마)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말한다) 및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로서, 입목은 그 세율이 1천분의 20이다)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의하면,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은 입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0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뺀 세율, 즉 "0"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록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이 사건 처분일인 2015. 9. 10. 이후에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목을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등 참조).

2)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임산물이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에 불과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

3)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그러나 위 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임산물을 취득하자 곧바로 그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산물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입목'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닌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인지 여부는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임산물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공고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비로소 '벌채된 원목' 또는 '벌채를 위한 원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두52368, 2017두45254)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인 2015. 9. 10. 이후에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산물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일부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47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16. 9. 1.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을 통하여 취득한 임산물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박상한

판사 김웅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2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소반
임산물 소재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 수 인(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297㎜(백상지 80g/㎡)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소반)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끝.